

'99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

의안 번호	3 - 21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05.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3인 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,
-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음.

2.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,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,
- 지난 30년간 양주군과 우리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당시 '81. 7. 1 ~ '82. 8. 9 까지 본청 경리계장으로서 세출 및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 하였음은 물론, '9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석동씨를 위원으로 추천함.

